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1201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변론 종결2021. 7. 7.

판결 선고2021. 8. 25.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9. 8. 26.자 재산분할계약은 "금 164,150,686원 및 이 중 금 86,956,165원에 대하여는 2019. 11. 2.부터 2019. 12. 1.까지는 연 6%의, 금 77,194,521원에 대하여는 2019. 11. 7.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6. 및 2018. 4. 17. 소외 C이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E가맹계약으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4개를 발행하여 주었는바, 위 C은 위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미송금 과다, 순자산 미확보 등)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위 각 보험약정에 따라 D에 보험금 합계 164,150,686원(= 2019. 11. 6. 지급 제1, 2보험 77,194,521원 + 2019. 11. 1. 지급 제3, 4 보험 86,956,165원)을 각 지급하였다(위 보험금 지급에 대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554)은 2020. 9.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1. 2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19. 8. 16. 협의이혼(이 법원 2019호협519) 신고를 한 사람인바, C은 2019. 9.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9. 8. 2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C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 당시인 2019. 8. 26. 이미 손해배상채무 등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에 대한 사전 구상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가사 2019. 8. 26.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인 C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E)이 매출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추이를 잘 알면서도 위 보험사고 발생 전후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를 한 것은 그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나아가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E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는바 악의는 확실히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 후 기왕에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상당한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이 2019. 8. 26. 정확히 무슨 내용의 보험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인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입증이 부족하며, 단순히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C이 보험사고 발생을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바 C의 악의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고, ②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는 피고와 C의 협의의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서(매수자금 조달, 부부공동재산 기여 등 고려)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C으로부터 자녀들의 양육비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협의하였던 것으로서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내지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최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 피고 제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 피고와 C은 2013. 11. 11. C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것과 관련하여 ① 현재 부부 공동재산 중 아파트 임대차(전세)보증금 50,000,000원과 관련하여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며, ② C 명의로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약 1년 후 C의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그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③ 향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얻게 될 재산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합의를 하였는바(을 제2호증), 이 사건 소유권이전행위 중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부분은 위 합의에 기한 증여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여 전의 합의에 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 C은 2015. 3.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등기원인: 2011. 12. 14.자 매매), 2016. 8.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2016. 8. 25.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주었다(등기원인: 2016. 8. 18. 증여).

○ 피고는 C과 혼인신고를 한 2006. 11. 2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였고, 2015. 11. 20.경 퇴직금 134,407,509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퇴직금 및 피고가 모은 돈 등에서 C에게 2015. 11. 20. 금 60,000,000원, 2015. 12. 28. 금 40,000,000원, 2016. 1. 18. 금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을 제3호증).

○ 피고는 2018. 1. 19. 피고 명의로 금 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8. 3. 23. 그 중

2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 피고 등은 2018. 3.경부터 E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C은 2018. 5. 20.경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도한 것을 피고에게 다시 발각당하였고, 2018. 6. 14. 편의점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행위로 인하여 2018. 11. 29. 기소되었다(이 법원 2018고합260, 을 제16호증).

○ 피고는 2019. 4. 12. 자녀 2명을 피고가 양육하는 등 내용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9호협519), 피고와 C은 2019. 4. 15. ① 피고가 C의 형사합의금을 마련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하되, ② 유책배우자인 C은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두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와 C은 2019.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이상, 을 제4 내지 7호증).

○ 피고는 2019. 5. 16. 소외 F를 통하여 C에게 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을 제9호증), 2019. 5. 21.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되어, 2019. 5. 29. C의 위 유사강간 등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 제16호증).

○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C의 1/2 지분에 대하여 2018. 7. 25. 가압류가 집행되었는바, 피고는 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위하여 2019. 8. 8. G 변호사에게 70,199,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는 559,02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는 538,166,420원인바(감정인 H의 감정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I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9. 9. 5. 말소되었고(채무자 C, 채권최고액 442,000,000원), 2019. 9. 5. J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51,000,00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K호, L)가 경료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M호에 대하여는 N의 임대차보증금(전세) 100,000,000원이, O호에 대하여는 P의 임대차보증금(전세) 85,000,000원이, Q호에 대하여는 R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이 각 존재한다.

○ 아산시 S오피스텔 T호에 대하여 2011. 8. 9.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등기원인 2011. 7. 21.자 매매, 거래가액 152,030,000원), 2013. 12. 5. U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84,000,000원) 및 2015. 4. 15. V의

전세권설정등기(30,000,000원)가 각 설정되어 있다(갑 제8호증의 1).

○ 평택시 W 외 2필지 X건물 Y호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7. 11. 10. 및 2019. 4. 9. 각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체에 대하여 2019. 6. 7. 소외 Z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등기원인: 2019. 5. 31.자 매매, 거래가액 360,000,000원), 2015. 8. 11. 전체에

대하여 주식회사 AA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존속기간 2015. 8. 10.부터 2020. 8.

15.까지), 2017. 11. 10. 전체에 대하여 AB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이는 2017. 11. 10. 말소되었으나, 2019. 6. 7. AC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시 경료되었다(채무자 Z, 채권최고액 252,000,000원, 이상 갑 제8호증의 2).

○ C이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 얻은 근로소득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채무초과 상태인데,

협의이혼 후 위 가압류 해제 관련 70,000,000원 및 E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가져갔다고

하며, 비록 피고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인당 월 7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을 제6호증)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행위가 과도한 재산분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성욱

별지